

#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국제법 발효에 즈음하여-

이 윤 구\*

- I. 머리말
- II. 국제협약의 의의
- III. 아동의 권리 국제협약의 제정배경
- IV. 협약의 주요내용
- V. “아동의 권리”를 위한 세계정상회의
- VI. 국제협약과 한국의 과제
- VII. 맺는말

### I. 머리말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이 96개국의 조인과 22개국의 비준(1990년 8월 4일 현재)절차를 마치고 9월초에 공식발효가 되도록 확정되었습니다.<sup>1)</sup> 참으로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기쁜 마음 누를 길이 없습니다. 인류역사의 한 거대한 전진인 동시에 획기적인 이정표가 마련되었습니다

다.

“아동”의 연령은 이 협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출생아로부터 18세까지이기<sup>2)</sup> 때문에 우리나라의 청소년육성법에 의한 대상(9~24세)중에 해당되는 9~18세의 많은 미성년 남녀가 이 새로운 국제협약의 범주속에 포함됩니다.

청소년정책이나 프로그램에 관여하고 종사하는 기관이나 직원들이 이 새로운 협약의 중요성의 이해와 함께 우리 모두가 성실하게 이행해 나가야 할 이 국제법의 내용을 포괄적으로나마 소개하기 위하여 이 적은 논문을 쓰게 되었습니다.

### II. 국제협약의 의의

“아동의 권리”가 국제적으로 논의되고 중요

\* 한국청소년연구원장

1) 유네스코 동남아세아 지역 아동의 권리 협약에 관한 회의(태국·방콕)회의자료, 1990.8.8.

2)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제1조

한 결의를 본 것은 192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구라파에서의 일이었습니다. “아동구호기금 세계연맹”<sup>3)</sup>의 “제네바 선언”<sup>4)</sup> 5대원칙은 같은 해에 국제연맹(UN의 전신)에서 추인·채택되었습니다. 그후 다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잣더미 위에 양상하게 서서 울고 있던 수 없는 아동들을 살리고 보호하기 위하여 1948년에 “제네바 선언”은 확대 강화되었고 1959년에는 유엔총회에서 “아동의 권리(10개조) 선언”<sup>5)</sup>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동 청소년에 관한 국제적인 합의문서는 약 80여종에 달할만큼 많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아동의 권리를 정확하게 규정한 문건은 위에서 언급한 권리선언뿐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이 중차대한 “선언”은 다분히 선언적이며 미래지향적인 문서로서 유엔회원국들이 꼭 안 지켜도 규제할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거의 의미가 없다는 비판을 날카롭게 받아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몇십년동안 “아동의 권리”에 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나 전문가들은 아동의 살 권리, 사랑받을 권리, 공부하며 행복할 권리가 이제는 법률로 정해져서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도 적용을 받게 되어야 하겠다는 의견과 의지가 줄기차게 표현되었습니다. 1979년 “세계아동의 해”이래 십여년동안의 준비과정을 거쳐서 유엔이 지난해 총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국제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선언차원에서 국제법의 새로운 그리고 현실적인 차원으로 구체화시켰습니다.

1990년 9월 2일 이 조약이 발효됨과 동시에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어느 나라든지 이 54개조의 국제법에 저촉이 되는 국내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지 않으면 떳떳하지 못하고 유엔에서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됩니다.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소극적인 측면에서 보다는 이 법을 최소한의 바탕으로 받아 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아동의 모든 유관 법률을 개폐하고 청소년과 아동의 복지사회를 이룩하여 나가는 것이 오늘의 국가사회의 할 일이 되었습니다.

### III. 아동의 권리 국제협약의 제정배경

1970년대 말엽에 폴란드 정부는 인권선언이 국제협약으로 강화된 같은 맥락에서 아동의 권리도 국제법으로 제정공포되는 것이 좋겠다는 강한 의견을 유엔에서 표명했었습니다. 그 까닭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촌에는 매일 36만 명의 새 생명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전문가의 표현을 빌리면 이 지구촌에서 현대처럼 과학과 기술이 발달된 상황아래서도 3~4만 명의 나이 어린 생명들이 날마다 죽어가고 있어서 “조용한 위기”(silent emergency)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만1세 미만에 생존할 권리를 박탈당하는 영아가 적어도 2만5천5백명이고 돌을 넘기더라도 다섯살까지 못 사는 어린 것들이 1만3천명씩 날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양심을 찌르는 일은 이렇게 죽어가는 생명들 가운데서 의학적으로 살리지

3) Save the Children Fund International Union

4) Geneva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5)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the Child”

못할 사람은 아주 적은 수에 그치고 대부분은 단순한 굶주림이나 질병, 부모의 무지와 방치·방관의 죄로 사망을 피하지 못하는 결과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영아사망의 97%는 가난하고 미개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한가지 사실만도 우리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도 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후진국에만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 앞서가는 나라들은 그들대로 가공할 만큼 큰 청소년 아동의 과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가출, 성폭력, 약물 오남용, 정신질환, 흉악범행, 자살같은 문제가 늘어가고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중진국 그룹에 속한 나라들은 급격한 사회변동속에서 선진국이나 후진사회의 문제들을 다같이 안고 고전하고 있습니다.

집이 없이 거리에서 사는 어린이가 1억이나 되고 비슷한 수의 청소년과 아동이 학교문턱에 들어서 보지도 못한채 교육의 권리를 빼앗긴 가엾은 상황에 있습니다. 1억5천5백만의 어린이들은 절대빈곤이라고 불리우는 병마에 시달리며 약해지고 병들고 죽고 있습니다. 살아남는다 해도 건강을 잃은 사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회의 부담이 되고 맙니다.

아름다운 문장의 선언만 가지고는 이러한 인간가족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게 된 것이 20세기의 막이 내리고 있는 지구촌의 현실이라는 인식아래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아동의 기본적인 절대적인 권리를 존중하고 그들의 내일과 미래를 보장하는 과업에 총력을 기울이는 일을 법으로 정하여 실행토록 할 목적으로 이 국제협약이 유엔에서 지난해 11월에 결의되고 금년 가을에 발효케 되었습니다.

#### IV. 협약의 주요내용

협약은 전장(前章)과 함께 III부로 나뉘어 54개조인데 II, III부는 비준절차와 각국 정부의 책임등을 명시하는 부수적 조항(제42조~54조)이며 제I부(제1조~41조)가 본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41개조항을 일괄하여 그 가운데 두드러지게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가지를 열거·해설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아동과 관련된 모든 공적, 사회복지적, 행정적, 법률적 조치는 공사(公私)간에 아동의 이해관계를 우선적으로 취급해야 한다”(제3조 제1항)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부모나 기성세대를 중심으로 모든 사회적 결정들이 행해지는 오늘 우리의 현실에는 거의 혁명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꼭 지켜져야 할 귀중한 규약입니다.

둘째로, 어린이의 “생존”자체를 보장해 줄 책임을 이 협약은 부모, 보호자, 사회와 국가에게 엄숙하게 지우고 있습니다. 건강과 영양, 주택과 의류(제24, 27조)의 적절한 공급; 피난, 확대와 착취, 전쟁, 마약등으로부터의 보호(제22, 33, 34, 36, 38, 39조)필요; 장애아동과 소수(낙오)그룹의 아동을 위한 특별한 배려(제23조, 제30조)등이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신체와 정서, 도덕적 그리고 심령적 성장과 발달, 특히 배울 권리가 제27조와 제2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어린이가 보호의 울타리밖에 있어서는 안되며 최소한의 의무교육이 재정적 부담없이 주어져야 한다고 법은 밝힙니다. 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의 균등한 기회도 제공되어야 한다고 법은 명명백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교육현장이 얼

마나 이 협약의 정신과 조문에서 먼가 하는 생각을 하면 어께가 무거워 집니다.

넷째로, 한 생명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름”과 “국적”을 가지고 “부모가 누구인지”를 “알 권리를 부여하라”고 협약은 엄하게 명합니다(제7조). 이름도 국적도 분명치가 않고 부모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처지의 아동에게는 국가가 책임을 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되어 있습니다(제8조). 사생이나 혼혈아가 아직도 심심치 않게 탄생하는 우리의 강토를 생각하며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게 됩니다.

다섯째로,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유해한 시청각 자료들을 엄격하게 규제해야 한다고 협약은 못박고 있습니다(제17조). 잡다하고 불건전한 음반이나 비디오가 홍수처럼 떠다니는 우리 사회가 새로운 노력을 기우려야 할 분야입니다. 부모가 직장 때문에 자녀를 돌보기 힘들 때 아동이 적절한 보호를 받아야 하고(제18조) 휴식과 여가시간, 그리고 문화와 예술활동을 즐길수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제31조).

여섯번째로, 해외(국제)입양은 어디까지나 아동의 복리를 위해 있어야 하는 사업인데 보내는 나라(대체로 빈곤한 후진국)나 받는 나라(물질적 선진국)의 가정이나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반면 아동자신의 이해와는 동떨어진 불행한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에 유의 하여 국가적, 국제적인 규제가 밝혀져 있습니다(제20조, 제21조).

## V. 아동의 권리를 위한 세계 정상회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한 행사가 9월 29~30일에 유엔에서 개최됩니다. “어린이를 위한 정상회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말리, 멕시코, 스웨덴, 이집트, 캐나다, 파키스탄 등 6개국의 발의주도하에 세계의 정상 70여명(대통령, 왕, 국무총리)이 모여서 새로운 결의를 다지며 아동을 위해 세상 모든 나라들이 과감한 새 정책들을 실천하여 영아사망을 줄이고, 교육환경을 밝게 하고 일터와 놀이터전을 고루 갖추어 주며 온갖 학대와 무관심을 물리치는 새 시대와 새 세기의 아침을 열어 유산으로 넘겨 주자는 결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어린이의 일을 토의하기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지도자들이 한곳에 모이는 일이 역대 미증유의 사전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아무리 급하고 중한 세계적인 과제가 있다해도 60~70명의 정상이 한곳에 한가지 의제를 가지고 회담한 일이 없었습니다.

이 정상회담을 지지하고 정신적인 기초를 놓기 위하여서 7월 24일부터 27일까지 미국동부 프린스턴 대학에서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종교지도자 이백여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토론한 후 역사에 길게 남을 선언문과 행동지침<sup>6)</sup>을 결의한 것도 의미있는 일이었습니다.

6) World Conference on Religion and Peace: Declaration, The World's Religions for the World's Children(1990.7.27., Princeton, USA)

## VI. 국제협약과 한국의 과제

국제협약이 아무리 훌륭한 국제법이라고 해도 우리 정부와 국민이 이법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지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우선, 우리나라에서는 지난해부터 유니세프의 정성어린 노력으로 몇가지 행사와 사업이 이행되었습니다. 금년 9월달만해도 아동들의 축소정상회담, 범종교적 결의대회, 그리고 촛불축제등이 세계정상회담에 앞서서 거행됩니다.

중요한 몇가지만 우리 나라가 해야 할 일들을 열거해 봅니다. 우선 우리정부가 이 협약에 동의하는 조인을 하고 곧 바로 비준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00여개국이 벌써 서명을 했습니다. 우리는 유니세프의 이사국입니다. 국제사회에서 후진국이란 오명을 씻기 위해서라도 서명·비준을 서둘러야 합니다.

두번째로, 우리의 과제는 이 협약의 정신과 조문을 우리의 현행 제법들과 견주어 보고 우리 법률의 개폐를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가야 합니다. 아동의 연령개념, 국적, 해외입양, 사회보장, 교육문화등의 모든 법률을 한번 검토해보는 좋은 기회로 삼고 학계, 행정부, 청소년 아동단체들이 뜻을 모아 행동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우리나라도 이 행정의 시행과정을 관찰하고 감시하고 보고하는 국제적 기구에 적극적으로 가담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문화적으로 선진하는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못하면 후진국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 VII. 맺는말

“아동의 권리”가 국제법으로 정해져야 하리만큼 인류의 문명은 사실상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가정과 지역공동체와 국가사회, 그리고 인간가족 50억이 삶의 참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을 경외하는 도덕이 공고하게 존재하고 있다면 “아동의 권리”를 강조하는 법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가슴이 몹시 아프고 부끄럼을 누를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명이 창조된 이래, 인류의 문명이 밝아 온 지난 만여년의 역사속에서 약하고 세력이 없고 혼자 살기에 힘겨운 아동들의 살 권리, 살아서 건강하게 자랄 권리, 공부하고 일하고 뛰어 놀 권리가 오늘처럼 명쾌하게 명문화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20세기의 해가 서산에 기우는 1990년은 분명하게 인간가족이 20세기에 세운 금자탑중의 금자탑을 세운 해로 우리의 후손들이 역사책에 올려놓고 반기게 될 것으로 이 사람은 굳게 믿어마지 않습니다.